



제29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2호)

# 검 토 보 고 서

2023. 7. 14.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5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경기도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들의 고른 취업 기회 제공과 고물가시대 취업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미취업청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규정 신설 (안 제23조의3)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제2항
- 예산조치 : 「붙임」
- 관련부서 : 청년정책과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5. 18. ~ 6. 7.(20일간)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남양주시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향상과 능력개발 기회

를 제공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취업애로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3조제3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신규 사업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발생  
- 1인당 연 3회,회당 최대 10만원 응시료 실비 지원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량 : 매년 3% 증가(청년인구 증가 추세 반영)
- 경기도 보조금(50) : 시비(50) 매칭사업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명)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129,200	133,740	137,700	141,660	145,800	688,100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	도비	64,600	66,870	68,850	70,830	72,900	344,050
	시비	64,600	66,870	68,850	70,830	72,900	344,050
	대상자	718	743	765	787	810	3,826

다. 재원조달방안: 도비 50%, 시비 50%

- 도비 보조금 및 자체재원으로 일반회계에 편성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 「**청년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도지사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아탐색·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도지사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 방안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4.11.]